



캘리포니아의 보호 및 지지 시스템

www.disabilityrightsca.org

수신자부담 전화: (800) 776-5746

TTY: (800) 719-5798

#2: 발달 장애 서비스 &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주 예산 삭감에 대한 사실 개요 – 2009년 7월 28일

지역 센터 및 조기 시작 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행동 중재 서비스들¹

주 입법부는 DD 예산을 3억 3,400만 달러 삭감하도록 발달 서비스 부처(DDS)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 사실 개요는 지역 센터 및 조기 시작 수요자들을 위한 행동 중재 서비스, 그러한 변경 내용의 예외 사항들, 지역 센터가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려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법규가 어떻게 변경되었나

새로운 법규는 응용 행동 분석 (ABA)와 심화 행동 중재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지역 센터의 행동 중재 서비스 구매 역량을 제한합니다. 이 법규들은 랜터먼 법(Lanterman Act) 및 조기 시작 수요자들에게 적용됩니다.

¹들은 Budget Trailer Bill (TBL) ABx4 9의 일부입니다. http://info.sen.ca.gov/pub/09-10/bill/asm/ab_0001-0050/abx4_9_bill_20090728_chaptered.pdf에서 법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복지 & 기관 코드, 4686.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규에 의거, '행동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판매자라도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판매자가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각 수요자의 행동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그 수요자를 위한 중재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3. 기획 팀 구성원들에 의한 검토 및 고찰을 위해 지역 센터에 중재 계획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재 계획은 계획의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유형, 시간, 부모 참여 등 특정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²

부모 참여

새로운 법규들은 부모 또는 부모들이 중재 계획에 참여할 때 지역 센터가 행동 중재 서비스를 구매할 수만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요자의 부모이거나, 중재 계획에 요약된 부모 참여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 및 지역 센터에 알려서 귀하와 귀하 가족에 합당한 중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센터는 귀하의 불참을 행동 중재 서비스를 중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모 참여는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동 중재 기본에 대한 그룹 지도의 완수;
- 중재 계획에 따른 중재 전략의 실행;
- 데이터 수집;
- 필요한 경우 어떠한 임상 미팅이라도 참여; 또는
- 보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시된 행동 수정 자료의 구매 또는 커뮤니티 개입.

지역 센터들은 행동 서비스 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하여 부모들께 비용을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 센터들도 합당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방법으로 부모들을 참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랜더만 법 및

² "부모"는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의 타이틀 17, 조항 52000의 하부조항 (b)의 (15)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모는 생물학적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기 시작 수요자들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서비스들처럼, 행동 중재 서비스들은 각 개인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행동 서비스에 대한 기타 제한 조건들

또한, 지역 센터는 일시적 간호 위탁 및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동 중재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어렵거나 복잡한 행동들로 인해 더욱 강화된 위탁 간호가 필요하다 해도, 일시적 간호 위탁은 행동 중재와 동일하지 않으며, 위탁 서비스 제공자들은 행동 중재 서비스를 수행할 역량 또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가족이 중재 계획을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 행동 위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 위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법규들로 인해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지역 센터는 중재 계획의 치료 목표 및 목적이 달성될 때 귀하의 행동 중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요자들에게 치료 목표 및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귀하의 지역 센터는 치료 목표 및 목적이 현재 환경 및 필요를 반영하여 갱신될 수 있도록 중재 계획을 6개월마다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그렇게 갱신된 치료 목표 및 목적이 지속적인 행동 중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행동 중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규들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증거에 근거한 실행”을 반영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행동 중재 서비스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입니다.³

IPP (개인 프로그램 계획) 또는 IFSP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의 일부로서 이미 행동 중재 서비스를 받고 계신 수요자들을 위해, 지역 센터는 변경을 적용하기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센터가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나?

지역 센터가 귀하의 행동 중재 서비스를 변경하려는 경우, **IPP 미팅을 열고 변경 내용에 관하여 귀하와 합의를 하거나, 귀하께 서면 통지를 해야**

³ 이 부분은 TBL 법제화 즉시, 즉 2009년 7월 28일부로 발효됩니다.

합니다⁴ 통지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기 전 30 일 이내에 주어져야 합니다⁵
통지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지역 센터가 취하는 조치;
- 지역 센터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조치에 대한 이유
- 발효일; 그리고
- 그 조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규, 규정 또는 정책.⁶

귀하께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서 지역 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려는 경우, 통지 수령 후 10 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 일 이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⁷ 그렇지 않으면, 30 일 이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⁸

지역 센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하여 더 중요한 정보를 원하시면, 사실 개요, “정당한 절차 및 청문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⁴ 통상 귀하께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결정은 IPP 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646.4(a)-(c). 그렇지만, 법률은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IPP 에서 서비스를 축소, 종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30 일 기한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0.

⁵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0.

⁶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01. 정보는 귀하께서 이해하시는 언어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⁷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5.

⁸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0.5(a).